신입직 필기전형 가점기준(과락점수시 미적용)

□ 법정 및 사회형평적 가점

평가항목	우대가점
공통	○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가점 부여(만점의 10% 또는 5%) (단,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: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. 단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) ○「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(10%) ○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(5%) ○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(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) (5%) ○「아동복지법」제16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(공고마감일 기준)인자(5%)

*** 전형별 만점기준**
*** 2가지 이상 해당시 중복 적용**

□ 일반가점

평가항목	우대가점
공통	○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(2%) ○ 우리공사 체험형(청년)인턴 수료자(5%) -인턴 수료 후 3년 이내, 연장 계약한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인정 ※ 근무성적이 "우"이상인 자에 한함
공사 재직자 (6급 기계·전기·전산 / 7급 기계·전기)	○ 우리 공사 특정직,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(10%) ※ 근무성적이 "우" 이상인자에 한함, 단,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 수습평정 성적으로 함
7급(기계, 전기)	○ 산학협력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교육 수료자(2%) ○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(2%)

*** 필기전형 만점기준**
*** 2가지 이상 해당시 중복 적용**